부 재 자 신 고 서

이 신고서는 2012년 3월 27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인 구·시·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.

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 전일(2012. 3. 26)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주 소 (주민등록지)	□□□-□□□			세 대 주 성 명	
거 소 (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)	□□□-□□□			전화번호 (휴대전화번호)	
성 명		생년월일		성 별	남·여

부재자 신고사유란의 해당사유에 ○표를 하고, 거소에서 투표할 사람 중 6·7·8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
투 표 구 분	부재자 신고사유	확 인 자	확 인 란
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 하는 사람	1. 군인	해당없음	해당없음
	2. 경찰공무원		
	3. 병원·요양소·수용소·교도소(구치소)·선박 등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		
	4. 선거관리에 종사하는 사람		
	5. 그 밖에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		
거소(자택·요양소 등 머무는 곳)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	6.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	부대장·경찰관서장	• 장의 직명(성명) ㊞
	7. 병원·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	병원·요양소의 장	• 장의 직명(성명) ㊞
	8.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	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·리·반의 장	• 장의 직명(성명) ㊞
	9.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	해당없음	해당없음
	10.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		

본인은 「공직선거법」 제38조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하고자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㊞

_____구·시·군의 장 귀하

주: 1. "주소"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되,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.

2. "거소"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①군인은 부대소재지의 행정구역명칭과 고유사서함번호 및 소속 중대명을, ②승선자는 함정 또는 배에서 내리는 때의 머무는 곳을, ③병원·요양소에 머무는 사람과 수용소·교도소(구치소)에 수용·수감된 사람은 그 기관·시설명을, ④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(병원·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은 제외함)과 부재자투표대상이 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, 그 밖의 사유로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그 거주하는 곳의 상세주소와 참고항목까지(세입자는 "○○○댁"까지) 자세히 적어야 하며, "전화번호"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.
   ※ 지번주소를 적는 경우에는 통·리·반·번지까지, 아파트 등은 동·호수까지 적습니다.

3. 거소(자택·요양소 등 머무는 곳)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확인은 그 소속기관·시설의 명칭과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직인(職印)을 찍거나,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·리·반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그 사람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.

4.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.

5.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 및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재자신고인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.

6.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「공직선거법」 제247조에 따라 처벌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)될 수 있습니다.

풀 칠 하 는 곳

(접 는 선)

(보내는 사람)

우 편 요 금
수취인후납부담

□□□-□□□

(받는 사람)

시·도 구·시·군 읍·면·동 장 귀하

부재자신고서 재중

□□□-□□□

(접 는 선)

(접 는 선)